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055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통합지휘소의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 재난현장 통제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대한 사항(안 제20조)
- 복구체계의 전환 및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 제24조)

3.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14. 2. 24. ~ 2014. 3. 1.(의견 미반영)

1) 의견자 : 울산중부소방서 이태희

2) 의견서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관련 조항 :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의견서 제출내용 :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업무는 KT 등 통신시설 가설 및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협조 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회신내용

가)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 준 조례」를 기본으로 한 제정안으로,

나) 본 조례안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의 조문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에도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응급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관련업무에 대한 조례개정 등이 시달되면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⑤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소장(해당 실·국·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으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5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04. 07.(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4. 04. 11.(금)
- 위원회심사 : 2014. 04. 15.(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통합지휘소의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 재난현장 통제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안 제20조)
- 복구체계의 전환 및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 제24조)

4.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석기)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